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23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김장겸·엄태영·강승규

김예지 · 김재섭 · 김승수

최수진 • 고동진 • 박대출

박충권 • 이상휘 • 박정하

진종오 · 최은석 · 권성동

유상범 • 박수영 • 조정훈

송언석 · 김석기 · 김종양

권영진 · 김도읍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한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가상 정보의 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상 정보의 표시 방법과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가상 정보의 표시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가상 정보의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거나 삭제 등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이용 정지 또는 해지, 수익제한 등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생성 또는 수정·편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자는 인공지능 생성물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제6항에 따른 이용자 보

호에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을 이 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 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한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한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가상 정보의 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상 정 보의 표시 방법과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

거나 편집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의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가상 정보의 표 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 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상 정보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가상 정보의 표시 를 하거나 삭제 등 접속을 제 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이용 정지 또는 해지, 수익제한 등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생성 또는 수정·편집할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자는 인공지능생성물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표시의 방법, 제6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u><신 설></u>

<u>4의3.</u>·<u>4의4.</u> (생략)

5. ~ 25. (생 략)

④ (생 략)

3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u>4의4.</u> · <u>4의5.</u>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